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나66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김국진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11. 10.

판 결 선 고 2021. 12. 8.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가소158370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참조). 그리고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분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10. 2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21. 1. 15.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고 나서야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2021. 1. 1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25.경 'C'라는 상호로 결혼정보업을 운영하던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결혼상대자와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회원가입비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경 피고의 소개로 D를 만나 교제해 오다가 2020. 2. 9. 가족 상견례를 하고 2020. 4. 12.자로 결혼식을 거행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성혼 사례비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0. 2. 24.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1.경 D과 파혼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20. 4. 12.자로 예정된 결혼식을 취소하였으며, 이후 피고에게 위 성혼 사례비 1,000만 원을 2020. 3. 31.까지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성혼 사례비 1,000만 원은 원고와 D 사이에 혼인이 성사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것인데, 이후 원고와 D의 혼인이 성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성혼사례비 1,000만 원을 보유할 법률상 권원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요구한 날의 다음날인 2020.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족 상견례가 성사된 경우 성혼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혼 사례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회원가입 계약서 제6조에 ‘결혼식 날짜를 확정하거나 양가 상견례가 이루어진 경우’에 성혼 사례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위 계약서에 원고의 서명, 날인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결혼식 날짜를 확정하거나 양가 상견례가 이루어진 경우 성혼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의 혼인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성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혼 사례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성사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성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성혼 사례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현, 판사 허일승, 판사 김수경